의안 번호 1311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6. 12. 6.(화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회부 : 2016. 12. 12.(월) 라. 위원회심사 : 2016. 12. 16.(금)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서는 실태조 사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를 위임한 바도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개정

3. 주요내용

○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어 단서조항삭제 (안 제6조제3항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○ 우리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자치

법규 정비과정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\bigcirc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관계법령〉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-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-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 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